



# 보도자료

고용서비스지원과 과장 김영국  
사무관 황선범

TEL : 02-2110-7145  
E-MAIL : hsunbum@hananet.net  
FAX : 02-503-9330

▶ 2009. 1. 15 배포  
▶ 총 쪽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노동부, 불합리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 3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자에게 최대 4년간 수급기간 자동안정
-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지급받지 못한 자에게 피보험단위기간 불이익 없애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실직자가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상)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그 수급기간을 연장하여왔다.

○ 그러나 질병·부상 정도가 심해 직업안정기관의 방문이 어려워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었던 실직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유발되어왔는데, 이번에 노동부는 3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 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수급자격 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 따라서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회사사정 등으로 휴직처리 등을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의 경우, 치료가 종결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음</li> <li>▲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u>직업안정기관에 사전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그 수급기간을 연장</u>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동사항 없음</li> <li>▲ 3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자는 <u>치료가 종결되어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때</u> 동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u>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u>받을 수 있음</li> </ul>

□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전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는 실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을 받은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받게 된다.

○ 그러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곧 재취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다가 재이직하여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직자가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새로 취업한 기간동안 또 다시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어야 함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 금융권 등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일부 근로자를 촉탁근로자 형태로 근무시키다가 6개월도 안되어 다시 퇴직시키는 사례가 있음

○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이전의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재취업한 이후의 근로경력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는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 것이다.

변경 전	변경 후
<p>▲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서 근로한 경력이 있는 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받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함</p> <p>▲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아니하고 재취업하였다가 재이직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새로 취업했던 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p>	<p>▲ 변경사항 없음</p> <p>▲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아니하고 재취업하였다가 재이직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u>과거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이전 취업하였던 기간까지 포함하여</u>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p>

□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질병·부상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한 자와 한번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지급관련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자의 권익이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붙임)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p>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u>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넣지 아니한다.</u></p>	<p>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현행과 같음)</p> <p>② ----- ----- ----- <u>구직급여를 받은</u> ----- ----- <u>구직급여와</u> ----- ----- ----- -----</p>
<p>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p>	<p>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p>

<p>1. (생략)</p> <p>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u>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u></p> <p>④ (생략)</p> <p>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p> <p>· ② (생략)</p> <p>&lt;신설&gt;</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구직급여를 받은</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p> <p>·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u></p> <p>1. 「<u>산업재해보상보험법</u>」 제40조에 따른 <u>요양급여를 받는 경우</u></p> <p>2. <u>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u></p>
--	---

※ 개정법은 공포한 날(2008.12.31)부터 시행한다.